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번호 : 20080100039]

<http://www.tlj.co.kr/>

[정보공개서최초 등록일자 : 2008. 07. 26.]

[정보공개서최종 등록일자 : 2025. 11. 03.]

[뚜 레 쥬 르]

정보공개서

CJ 푸드빌(주) 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CJ 푸드빌 (주)

[뚜레쥬르]는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약의 이행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을 부여 받았음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시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시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34 KT&G 을지로타워

대표번호: 1577-0700

F A X : 02-6740-4997

가맹사업 담당부서: 사업지원팀 (02-6740-4563)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CJ푸드빌(주)	가맹사업 뚜레쥬르 외식사업 빕스 외 5개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34 KT&G 을지로타워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2000.06.07.		2000.07.01.	김찬호	02-6740-4349
	법인등록번호	161511-0036967	사업자등록번호	312-81-42519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인 (임원)	대표이사	김찬호	전 화	02-6740-4230	FAX	02-6740-4349			
			주 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34 KT&G 을지로타워					
	사내이사	이치형	전 화	02-6740-4614	FAX	02-6740-4349			
			주 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34 KT&G 을지로타워					
	사내이사	안승준	전 화	02-6740-4278	FAX				
			주 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34 KT&G 을지로타워					
	감사	이효희	전 화	02-726-8130	FAX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2길 12, CJ THE CENTER					
계열회사	상호	씨제이올리브영 주식회사							
	본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24층							
	설립일	1995년 03월 15일							
	법인등록번호	110111-1138498		사업자등록번호	809-81-01574				
	대표이사	이선정	전화	1577-4887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24층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가 향후 영위할 뚜레쥬르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브랜드명	뚜레쥬르	뚜레쥬르는 “매일 매일” (프랑스어)이라는 뜻으로 매장에서 직접 구워 원재료의 풍미를 그대로 담고 있으며 천연재료 사용으로 건강을 지향하는 어머니의 정성을 담은 정직한 베이커리입니다.
상 호	뚜레쥬르 OO점	해당 지역 명 표기
가맹점 영업 목적 사용 상표 (서비스표)	뚜레쥬르	등록번호 410045278
		등록번호 410221477

5.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426,036,937	368,606,536	57,430,400	642,186,563	13,444,834	11,477,599
2023년	467,416,825	327,342,914	140,073,910	701,069,093	21,422,125	17,114,174
2024년	431,664,044	268,101,860	163,562,184	733,789,626	29,856,698	28,456,026

당사의 재무사항은 <별첨 1-1 재무상태표> 및 <별첨 1-2 포괄손익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김찬호	대표이사	17년 11월~21년 03월	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장	업무총괄 /

관련 임원			21년 03월~현재	CJ푸드빌 대표이사	대표이사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치형	사내이사	21년 01월~21년 10월 21년 10월~23년 01월 23년 02월~24년 01월 24년 01월~현재	CJ푸드빌 베이커리영업담당 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장 CJ푸드빌 글로벌사업본부장 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장	가맹사업관리/ 글로벌사업관리
	안승준	사내이사	18년 10월~22년 12월 23년 1월~23년 12월 23년 12월~24년 2월 24년 2월~현재	CJ제일제당 재무기획담당 CJ(주) 재무전략실 담당임원 CJ(주) 경영혁신TF CJ푸드빌 경영지원담당	경영지원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이효희	감사	21년 03월~24년 2월 24년 3월~현재	CJ대한통운(주) 재무팀장 CJ(주) 재무실 담당임원	재무전략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 (명)		직원수 (명)
2024년 12월 31일	상근	비상근	4,694
	3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CJ 푸드빌(주)	가맹사업 경영	1997.12 ~현재	뚜레쥬르 (등록번호: 20080100039)
				제과•제빵
계열회사	씨제이올리브영(주)	가맹사업 경영	2010.10 ~ 현재	올리브영 (등록번호: 20100100529)
				종합소매

2018년 2월 1일자로 투썸플레이스 사업부분을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상품류	명칭	등록권리자	등록번호	존속기간 (예정)만료일
뚜레쥬르	43	한글 로고	씨제이푸드빌(주) 외 1	41-0045278	2028.08.12
뚜레쥬르	30	한글 로고	씨제이푸드빌(주)	40-0415807	2028.08.12
뚜레쥬르	29	한글로고	씨제이푸드빌(주)	40-0415809	2028.08.12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ipris.or.kr>)

	9	신BI 로고	씨제이푸드빌(주)	40-1542113	2029.11.11
TOUS les JOURS	9	신BI 로고	씨제이푸드빌(주)	40-1530778	2029.10.11
뚜레쥬르 TOUS LES JOURS	35	한글 및 영문 로고	씨제이푸드빌(주)	41-0110734	2035.01.04
	43	CAFÉ TLJ 로고	씨제이푸드빌(주)	41-0132359	2026.05.23
	30	CAFÉ TLJ 로고	씨제이푸드빌(주)	40-0679304	2026.09.21
	29	CAFÉ TLJ 로고	씨제이푸드빌(주)	40-0679303	2026.09.21
	43	TLJ 로고	씨제이푸드빌(주)	41-0221477	2031.11.21
	30	TLJ 로고	씨제이푸드빌(주)	40-1025678	2034.03.04
	43	신 엠블럼	씨제이푸드빌(주)	41-0380205	2026.12.12
	30	신 엠블럼	씨제이푸드빌(주)	40-1214839	2026.11.11
	29	신 엠블럼	씨제이푸드빌(주)	40-1214838	2026.11.11
GRAIN DE CAFÉ FROM TLJ	43	그랑드 카페	씨제이푸드빌(주)	40-1273814	2027.08.02
GRAIN DE CAFÉ 그랑드카페 FROM TLJ	30	그랑드 카페	씨제이푸드빌(주)	40-1209546	2026.10.17
갓빵	30	갓빵	씨제이푸드빌(주)	40-1244714	2027.04.06
착한빵 BY TLJ	30	착한빵 BY TLJ	씨제이푸드빌(주)	40-1097778	2025.04.03
TLJ 순우유	30	TLJ 순우유	씨제이푸드빌(주)	40-1025677	2034.03.0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뚜레쥬르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1997.12.4 입니다.

2.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CJ 주식회사	뚜레쥬르	손경식	1997.12.04~2004.07.3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 가 500 번지
CJ 주식회사	뚜레쥬르	김주형	2004.08.01~2005.12.3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 가 500 번지
CJ 주식회사	뚜레쥬르	김진수	2006.01.01~2006.09.3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 가 500 번지
CJ 푸드빌(주)	뚜레쥬르	정진구	2006.10.01~2007.03.18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4-8 정산빌딩 3 층
CJ 푸드빌(주)	뚜레쥬르	박동호	2007.03.19~2008.06.1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3250 구산타워 6 층~8 층
CJ 푸드빌(주)	뚜레쥬르	김일천	2008.06.13~2011.03.17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3250 구산타워 6 층~8 층
CJ 푸드빌(주)	뚜레쥬르	김의열	2011.03.18~2012.03.29	서울시 중구 동호로 330 (쌍림동,CJ 제일제당빌딩 7~8 층)
CJ 푸드빌(주)	뚜레쥬르	허민희	2012.03.29~2013.10.3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30 (쌍림동,CJ 제일제당빌딩 7~8 층)
CJ 푸드빌(주)	뚜레쥬르	정문복	2013.11.01~2017.07.02	서울시 중구 동호로 330 (쌍림동,CJ 제일제당빌딩 7~8 층)
CJ 푸드빌(주)	뚜레쥬르	정문복	2017.07.03~2017.08.31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34 KT&G 을지로타워
CJ 푸드빌(주)	뚜레쥬르	구창근	2017.09.01~2018.08.19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34 KT&G 을지로타워
CJ 푸드빌(주)	뚜레쥬르	정성필	2018.08.20~2021.03.25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34 KT&G 을지로타워
CJ 푸드빌(주)	뚜레쥬르	김찬호	2021.03.26~현재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34 KT&G 을지로타워

3. 뚜레쥬르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케익/빵/식빵/도넛/쿠키/양과자/샌드위치 등
뚜레쥬르	제과제빵	케익/빵/식빵/도넛/쿠키/양과자/샌드위치 등

4. 최근 3개년도 말 뚜레쥬르의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316	1302	14	1323	1307	16	1326	1307	19
서울	230	220	10	231	220	11	226	213	13
부산	68	66	2	70	68	2	74	72	2
대구	50	50		57	57		56	56	
인천	64	63	1	66	64	2	68	66	2
광주	35	35		33	33		33	33	

대전	42	42		40	40		40	40	
세종	12	12		12	12		13	13	
울산	32	32		31	31		31	31	
경기	287	286	1	290	289	1	288	286	2
강원	49	49		45	45		42	42	
충북	73	73		76	76		74	74	
충남	65	65		62	62		62	62	
전북	40	40		38	38		37	37	
전남	54	54		53	53		56	56	
경북	81	81		83	83		85	85	
경남	107	107		108	108		111	111	
제주	27	27		28	28		30	30	

5. 최근 3년간 뚜레쥬르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12.31	1,285	89	61	11	89	1,302
2023.12.31	1,302	87	68	14	85	1,307
2024.12.31	1,307	76	62	14	76	1,307

* 계약해지와 종료는 최초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점한 경우 계약해지로 표시하였습니다.

6. 뚜레쥬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뚜레쥬르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특수관계 (계열회사)	씨제이올리브영(주) (올리브영)	Olive Young	20100100529	종합소매점	232/1,065	226/1,338	223/1,37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뚜레쥬르]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연 평균 매출액 (단위:천원)						산정 제외 점포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307	579,594	19,143	1,845,887	86,560	95,177	2,719	88	
강원	42	510,526	19,014	1,164,067	38,802	268,932	8,317	2	
경기	286	618,836	21,197	1,624,738	65,627	108,315	5,416	21	
경남	111	489,547	15,895	1,416,638	33,860	95,177	2,719	7	
경북	85	541,336	16,898	1,126,658	34,864	102,031	4,251	3	
광주	33	552,812	19,333	815,319	45,296	315,331	8,671	1	
대구	56	533,930	19,667	1,132,220	73,585	158,266	7,036	4	
대전	40	546,990	17,029	1,453,367	59,702	145,813	5,032	1	
부산	72	644,281	18,234	1,845,887	49,096	269,402	7,987	6	
서울	213	632,126	21,318	1,644,641	86,560	169,756	4,248	12	
세종	13	469,824	14,456	626,544	22,377	351,751	8,837	3	
울산	31	609,024	16,808	1,780,220	66,604	289,353	8,709	1	
인천	66	644,438	21,565	1,313,447	52,538	153,210	4,982	6	
전남	56	496,765	17,020	800,140	35,006	174,307	7,990	8	
전북	37	558,441	18,912	1,398,499	41,132	166,763	7,580	1	
제주	30	558,545	15,845	1,110,730	28,192	138,945	4,342	2	
충남	62	584,947	19,776	1,477,808	42,648	179,749	8,138	5	
충북	74	519,974	17,465	1,429,142	57,166	230,304	7,050	5	

※ 매출산정: 12 월말 기준으로 6 개월(180 일) 이상 영업을 진행한 가맹점만 수치 산정에 반영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연간)은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에 추정비율 1.91 를 곱하여 1 년(365 일)로 환산하였으며,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 사업자 원가분석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52.5% 내외 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특히 6 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 개월(180 일) 이상 운영이 되지 않았거나, 매출확인이 어려운 88 개 가맹점의 매출액은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307 개가 아닌 실제 1,219 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 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2 항 • 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가맹본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에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뚜레쥬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뚜레쥬르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307	2,327일

* 가맹점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은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이 아닌 최초 영업 시작일(오픈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가맹점 양도양수 경우도 새로운 양수인의 영업 시작일(오픈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의 일반 정보

뚜레쥬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상호/명칭	주 소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대전영업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297번길 38 동일빌딩 7층 (죽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CJ푸드빌(주)	1577-0700	17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가맹본부 직접운영	○	○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광주영업팀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200번길 21, 3층(장덕동 162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CJ푸드빌(주)	1577-0700	15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가맹본부 직접운영	○	○	○
대구 경북 경남 일부	대구영업팀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67 KT대구타워 신관 10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CJ푸드빌(주)	1577-0700	14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가맹본부 직접운영	○	○	○
부산 울산 경남 일부	부산영업팀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229 에이원프라자1310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CJ푸드빌(주)	1577-0700	20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가맹본부 직접운영	○	○	○

* 충청북도 충주, 제천, 단양은 서울영업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4년 광고선전비 [5,747,742 천원]와 판매촉진비 [10,479,441 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광고비와 판촉비의 가맹점사업자와의 본사의 분담하는 기준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8.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 광고선전비 및 판매 촉진비에는 CJ 푸드빌에서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인 (보험 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 계약자	CJ푸드빌(주)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 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 기간	가맹계약 체결일~영업 개시일	가맹계약체결일부터 최대 2개월
보장 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 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약 1개월 소요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I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1]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씨제이푸드빌(주)	의결 2024-105 (2023서가0134)	가맹사업법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9조 제1항)	2024.3.28.	시정명령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000	CJ푸드빌(주)	대법원 2021 다264369	대법원	2021.11.25.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가맹계약 거절 통보 및 해지 건에 대해 원고 피고에게 약 225백만 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70백만 원 지급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뚜레쥬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개점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획관리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개점 전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역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 불가 사유
총계		1,705			
개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비 - 오픈 인력지원 및 오픈 준비물 - 점포 실사 비용 - 가맹점 개점을 위한 노하우 제공의 대가 	1,100	가맹계약 체결 이후 요청 (프랜차이즈보증보험 가입 이후)	아래 참조	가맹점 개점 비용 으로 소모됨
기획 관리비	가맹사업 통일성을 위한 가맹점 인·아웃테리어, 설계도면 제공의 대가	330		시공 전	공사 완료 시 소멸
개점 전 교육비	가맹점사업자 교육에 대한 용역료	275		교육 실시 전	교육실시 후 소멸

* 가맹금의 반환 사유

- 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②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시키고, 그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③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로서 가맹사업 중단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④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⑤ 개점 전 교육비는 “을”이 가맹점 개점 전 교육을 완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각 과정별로 50% 미만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과정에 한하여 50%를 반환한다.

위 ①~④ 경우로 귀하의 가맹금 반환의 청구가 정당한 경우 당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며, 가맹금의 반환범위는 전체 가맹계약기간 중 계약 이행기간의 비율은 고려하며, 이미 계약을 이행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2) 거래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 계	1,000			
(현금)보증금	1,000	가맹계약 체결 이후 요청 (프랜차이즈보증보험 가입 이후)	미 이행 채무 가맹계약 위반 시	

* 거래 보증금은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으로 미 이행 채무 및 가맹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주)서울보증보험> 과 피해보상보험 가입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대체되는 예치가맹금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만원)
합계	2,705 (부가세 155만원 포함)
개점비	1,100 (부가세 100만원 포함)
기획관리비	330 (부가세 30만원 포함)
거래보증금	1,000 (부가세 없음)
교육비	275 (부가세 25만원 포함)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일반형 (20 평 기준)		카페형 (30 평 기준)		카페형 (40 평 기준)		지급기한	비고
		금액	3.3 m ² 당 금액	금액	3.3 m ² 당 금액	금액	3.3 m ² 당 금액		
총계		206,000 ~240,000	10,300 ~12,000	218,000~ 260,000	7,267 ~8,667	255,000 ~297,000	6,375 ~7,425		
인테리어	공급업체	61,000 ~69,000	3,050 ~3,450	6,7000 ~75,000	2,233 ~2,500	85,000 ~92,000	2,125 ~2,300	착공 전 50% 준공 시 50%	파사드 1면(6m 기준), 철거, 데크, 정화조, 소방설비, 화장실 등 제외
간판	공급업체	7,000 ~9,000	-	8,000 ~10,000	-	10,000 ~12,000	-	착공 전 300만원 준공 시 나머지	
가구류	가맹본부	26,000 ~32,000	-	29,000 ~35,000	-	37,000 ~43,000	-	착공 전 50% 준공 시 50%	대면형, 빌트인
설비류	가맹본부	87,000 ~97,000	-	89,000 ~105,000	-	95,000 ~110,000	-	착공 전 30% 준공 시 70%	
기타구매	공급업체	15,000 ~18,000	-	15,000 ~20,000	-	18,000 ~25,000	-	착공 전 업체 계약	에어컨, 전기증설 등
초도물품	가맹본부	10,000 ~15,000	-	10,000 ~15,000	-	10,000 ~15,000	-	오픈 1일전	제품, 소모품, 소도구 등 초도물량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위 표의 금액 외에 오픈행사를 진행할 경우 별도 실비(3,000천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위 표의 인테리어 공사에 추가 파사드 1면(6m 기준), 정화조, 소방설비, 철거, 데크,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 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합니다.
- * 인테리어 공사를 귀하께서 직접 실시할 경우 착공시 가맹본부에 SI관리비로 3.3m² 당 [15만원/부가세 별도/최소 SI관리비 금 100만원]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구분	내용
입지선정 주체	가맹점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 입지를 선정
점포 기준	실면적: 56.1m ² (17평)이상, 전면 6m 이상 (기준면적 이하의 경우라도 특수상권 및 점포특성에 따라 오픈 가능) 전기용량: 최소 55Kw 이상 (커피머신취급시) 건축물용도: 근린생활시설(제과점) 각 종 인허가: 보건증,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정화조용량, 소방설비 등
점포 선정	가맹점 사업자 점포 확보시 - 상권조사 실시 가맹점 사업자 점포 미 확보시 - 점포 물색 후 최종 희망 점포 상권조사 실시

상권 조사	상권 내 지역정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통계자료 및 특정기관 조사정보(통계청, 소상공인진흥원 등) - 지역 상권현황 조사
	후보점의 입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 수요지 및 주거형태 파악(연령별, 성별 구성비 등) - 주요 경쟁점 및 잠재 경쟁점 파악 - 권리 분석 및 시세조사 - 유동인구 주동선 파악 - 시계성, 연출성 파악
	입지 유형별 상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비교 대상점 선정 및 분석
출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조사에 따른 출점 가·부 결정 - 가맹점 사업자 최종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가 규정한 점주 교육과정 수료 정기교육, 보수교육 이수 (재계약 조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교육을 이수할 것
종업원	가맹점 실제 운영자 (가맹점관리자)인 경우 점주 교육과정 수료	가맹점사업자의 권한으로 채용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점포 종업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점포 종업원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정기교육은 년 1 회 실시되며 가맹점사업자는 격년에 한번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이때 정기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 ④ 비 정기교육 중 보수교육은 가맹점 위생 관리 및 가맹점 서비스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가맹점 실제 운영자(가맹점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정기교육, 보수교육은 재계약 전 필수 교육 과정이며, 본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

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직접 계약 체결하여 설비·비품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공급업체의 동일 사양의 신규 설비, 집기비품을 별도로 구입, 설치 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별도)

구 분	지급대상자	금액 및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상표사용료		해당 없음			
리스료		해당 없음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 없음			
재고관리 비용		해당 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 없음			
물품대금 등	CJ푸드빌(주)	상품, 원부재료의 일정 마진	기본 여신 한도	하자 있는 경우	
판촉분담금	CJ푸드빌(주)	행사별로 분담	별도 약정	반환되지 않음	공동 판촉에 한함.
광고분담금	CJ푸드빌(주)	5:5의 비율로 분담하되 사업자수에 따라 안분함	광고 시행 1달 전 통지	반환되지 않음	미 통지 시 본사 부담
제휴카드 등	-	-	-	-	가. 제휴카드 등 별도설명
CJ ONE카드	CJ푸드빌(주)	-	-	-	나. CJ ONE 카드 별도설명
상품권	-	-	-	-	다. 상품권 별도설명
모바일 상품권(쿠폰)	-	-	-	-	라. 모바일 상품권(쿠폰) 별도설명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	-	-	-	마.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별도설명
POS 프로그램	CJ푸드빌(주)	1대당 월 2천원	대금청구	반환되지 않음	POS 프로그램 개발, 유지보수(POS 유지, 보수 금액에 포함하여 대금 20천원 청구)

POS 유지,보수	CJ푸드빌(주)	1대당 월 18천원	대금청구 (업체 지급대행)	반환되지 않음	POS장비, 네트워크 유지보수 계약체결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및 유지보수	CJ푸드빌(주)	DID 설치 점포 월 30천원	대금청구 (업체 지급대행)	반환되지 않음	메뉴보드 등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제공 및 유지보수
O2O중계 서비스	CJ푸드빌(주)	별도 신청 점포 월 15천원	희망점포 별도 계약 체결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선택사항 온라인주문 채널사, 배달 대행사 연결 서비스
뚜레쥬르 브랜드앱	CJ푸드빌(주)	별도 신청 점포 월 판매 금액 4%(VAT포함)	희망점포 별도 계약 체결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선택사항 모바일 멤버십 및 O2O 주문시스템
오픈 운영 인건비	CJ푸드빌(주)	4,800천원 ~7,500천원	희망점포 별도 계약 체결	반환되지 않음	신규점포 선택사항 주방 인력 20일 4,800천원, 매장 인력 14일 2,700천원
점포기사 용역비	도급업체	월 3,630천원 ~3,751천원	도급업체 별도계약	반환되지 않음	기본 8시간 근무 (식대1일 8천원 별도)
보수교육	CJ푸드빌(주)	실시 전 통지	대금청구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위생관리 및 서비스 미흡 점포에 교육 실시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CJ푸드빌(주) 공급업체	개별 산정	대금청구	반환되지 않음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공급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착공시	착공전	별도설명
지연이자	CJ푸드빌(주)	연6%	지급기일 다음달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반환되지 않음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 지급의무 지체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조치 및 보수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가. 제휴카드 등

당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가맹점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고객에게는 혜택을 주는 마케팅형태로 통신사, 신용카드 등의 제휴 할인 및 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당사부담	가맹점 부담	정산
통신사 할인카드	50%	50%	분담금 월 단위 정산 후 익월 반영

신용카드	50%	50%	분담금 월 단위 정산 후 익월 반영
------	-----	-----	---------------------

- * 제휴카드사별 세부 부담 내역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알려 드립니다.
- * 신용카드 수수료는 가맹점 부담입니다.
- * 제휴내용, 조건 변경 시 사전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 가맹본부는 추가적인 제휴를 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분담비율은 가맹본부50%, 가맹점50%으로 결정됩니다.

나. CJ ONE 카드

당사는 고객들의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CJ ONE 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제반 권리의무 및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CJ 푸드빌 CJ ONE 카드

- 1) 가맹점사업자는 CJ ONE카드 카드회원이 점포에서 상품 구매 시, 해당 금액의 0.5%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어야 한다. 제휴에 의해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결제 금액의 0.1%를 적립해 주기로 한다. 최소 1,000점 이상 적립 시 10점 단위로 사용가능하며, 1점은 현금 1원에 해당한다.
- 2) CJ ONE카드를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는 적립금의 50%, 카드비용의 50% 및 통신비용을 부담하며, 가맹본사는 적립금의 50%, 카드비용의 50%, 시스템 운영비용, 서비스 운영비용 등을 부담한다.
- 3) CJ ONE포인트의 사용금액의 정산은 1개월의 사용한 포인트 금액에 대해서 익월 말까지 제3항에 의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100% 입금하기로 하며 고객의 거래 내역 변경에 따라 포인트 조정이 필요할 시, 확인 작업을 거쳐 합의 내용에 따라 정산 시 반영하도록 한다.
- 4) CJ ONE 카드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는 회원이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만 보유하고 개인 정보는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서만 사용한다.
- 5) 가맹점사업자는 CJ ONE 카드와 관련하여 얻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가맹점사업자는 CJ ONE 카드와 관련하여 얻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7)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이 부정한 방법[타인(고객 등)의 영수증을 사용하여 본인 또는 지인(가족, 친인척 등 포함)의 CJ ONE 카드(계정)로 CJ ONE 포인트를 적립하는 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8) CJ ONE카드의 운영 방법은 가맹본사의 영업 정책이나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 또는 POS를 활용하여 “을”에게 공지하기로 한다.

다. 상품권

당사는 각 가맹점포의 매출증진을 위하여 상품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 제도

- 1) 고객 상품권 결재
- 2) 점주 전산등록 후 컨설턴트 방문 시 수량 확인
- 3) 전산 등록 수량 입금 반영 (월 상시 반영)

구분	사용권종	수수료	정산절차
CJ 상품권	5천, 1만, 5만, 10만원 (4종)	3%	회입 상품권 전산 등록 수량 확인 후 입금 반영 (월 상시 반영)
CJ 푸드빌(외식) 상품권	5천, 1만, 5만원 (3종)	3%	
뚜레쥬르 상품권(現 판매중지)	5천, 1만원 (2종)	3%	
도서문화 상품권	5천, 1만원, 5만원 (3종)	2.5%	
국민관광 상품권	5천, 1만, 5만, 10만, 30만, 50만 (6종)	3%	
SK 상품권	5천(발행종료), 1, 5만원 (2종)	3%	
문화 상품권	3천(발행종료), 5천, 1만원 (3종)	3%	
쇼핑문화 상품권	3만, 5만원 (2종)	3%	

* 제휴 상품권의 종류 및 수수료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수수료(부가세 별도)는 가맹점 부담입니다.

라. 모바일 상품권(쿠폰)

당사는 각 가맹점포의 매출증진을 위하여 모바일 상품권(쿠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판매채널 확보하기 위하여 모바일 대행업체에서 자체판매(영업대행)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체에 판매수수료(발송대행수수료 포함)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에 대해 점포 : 본부가 각각 5: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용권종	수수료	정산절차
금액권	(모바일 금액권) 1 천원, 2 천원, 3 천원, 5 천원, 1 만원, 1 만 5 천원, 2 만원, 2 만 5 천원, 3 만원 외 다수	수수료 10% (본사 5%:가맹점 5%)	회입 상품권 월 단위 정산 후 익월 반영
	(CGV 편콘/모바일 MMS) 3천원, 5천원, 7천원, 1만원, 1만5천원, 2만원, 3만원 (7종)	수수료 8% (본사 4%:가맹점 4%)	
	(잔액관리 교환권) 5천원, 1만원, 2만원, 2만5천원, 3만원, 5만원 외 다수	수수료 6%~8% (본사 3%~4%:가맹점 3%~4%)	
메뉴교환권	우유식빵 외 약 100여종	수수료 10% (본사 5%:가맹점 5%)	

* 모바일 쿠폰 운영업체는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총 7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 모바일 쿠폰 종류 및 수수료는 대행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마.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당사는 각 가맹점포의 매출증진을 위하여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수수료	비고	정산절차
CJ그룹 기프트카드	수수료 6% (본사 3%: 가맹점 3%)	CJ그룹 참여계열사 사용 가능	결제 거래 건수 월 단위

(부가세별도)			정산 후 익월 반영
CJ푸드빌 기프트카드	수수료 6% (본사 3%: 가맹점 3%) (부가세별도)	CJ푸드빌 전 브랜드 사용 가능	결제 거래 건수 월 단위 정산 후 익월 반영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차액 가맹금에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구입대금과 배송을 위하여 들어간 경비는 포함되어 있으나 당사가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관비(홍보, 마케팅, 판촉활동 비용 등)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비용 포함 시 상기 차액가맹금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비율 산정 시 설비/가구는 제외하였습니다.

* 차액가맹금 매출산정 가맹점 수는 2024년도 구입요구품목 매출액이 발생한 점포로 계약종료, 계약 해지된 점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폐점하였으나 반품 등 처리되면서 금년에 반영된 경우, 휴업 등으로 금년도 매출액은 없으나 폐점한 경우 등으로 연간 평균 매출액 매출산정 가맹점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방 법	빈도 및 시기	문의 및 담당
위생 상태	담당자 수시 방문	수시	점포컨설턴트 및 위생파트
품질 관리	제빵기사 재교육 및 방문점검	수시	품질관리파트 및 기술지원팀
친절도 및 클레임 관리	담당자 수시 방문	수시	점포컨설턴트 및 CS파트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2) 당사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양수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대한 계약을 승계
하도록 할 것 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
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당
사는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에 관한 비용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
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뚜레쥬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뚜레쥬르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뚜레쥬르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 ②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BI 및 SI가 적용된 제품, 인테리어, 설비시설, 집기비품 등의 사용을 중지
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③ 대여 받은 매뉴얼 등의 모든 자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뚜레쥬르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 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 다른 품목이 추가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뚜레쥬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이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 (매출 금액)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당사의 특수관계인 포함)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뚜레쥬르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에서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위반시 책임			
	1차	2차	3차	4차
본사 미 승인 제품, 원재료 사용 및 제품 판매기준 위반 시 사용, 진열, 판매 시	시정조치	전 제품 7일 공급중단	전 제품 15일 공급중단	계약 해지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맹점의 매출활성화 및 전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표(물품구입 및 임차)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구입 및 임대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가맹점운영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대금의 결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편리성을 위하여 물품주문을 위한 여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정하는 기본 여신한도 내에서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으나 당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한도를 초과하여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 또는 계열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인수 등으로 뚜레쥬르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직영점, 가맹점을 승계하거나 출점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베이커리(빵, 케이크)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가맹본부	계열회사
	뚜레쥬르	-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설정 방법	아래 설정 기준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통해 정하고 가맹계약서 영업거점지역 표시도에 영업지역 표시
설정 기준	1)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제외 2) 주택가, 아파트상권의 경우 주 동선 기준 3) 역세권 및 오피스 상권의 경우 반경 300m 이내로 한계 4) 고립상권의 경우 고립지역만 상권부여 5) 기업체·학교·관공서·병원·대형슈퍼·연금매장·백화점·할인점·버스터미널·기차역·지하철역내 등 특수상권인 경우 별도 상권으로 분리 6) 2)~4)항의 경우라도 점포 앞 도로가 왕복4차선 초과하면 별개의 상권으로 분리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

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절차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동의를 얻는 방법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 여부

당사는 뚜레쥬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단체급식 (대리점 등)	대상	완제빵/샌드위치/케익 등 83종	단체 급식 및 식자재유통
	동원홈푸드	완제빵/샌드위치/케익 등 120종	단체 급식 및 식자재유통
	삼성웰스토리	완제빵/샌드위치/케익 등 108종	단체 급식 및 식자재유통
	신세계푸드	완제빵/샌드위치/케익 등 71종	단체 급식 및 식자재유통
	아라마크	완제빵/샌드위치/케익 등 94종	단체 급식 및 식자재유통
	아워홈	완제빵/샌드위치/케익 등 112종	단체 급식 및 식자재유통
	푸드마스	완제빵/샌드위치/케익 등 86종	단체 급식 및 식자재유통
	한화푸디스트	완제빵/샌드위치/케익 등 122종	단체 급식 및 식자재유통
	프레시웨이	완제빵/샌드위치/케익 등 619종	단체 급식 및 식자재유통
	현대그린푸드	완제빵/샌드위치/케익 등 104종	단체 급식 및 식자재유통
SSM	GS25	냉동반죽 등 6종(B2B 전용 제품)	편의점(세부업종 다름)
	세븐일레븐	냉동반죽 등 25종(B2B 전용 제품)	편의점(세부업종 다름)
	롯데마트	냉동반죽 등 18종	슈퍼마켓(세부업종 다름)
가맹본부	엔제리너스	냉동반죽 등 9종	카페(세부업종 다름)
	그레이팝플	냉동반죽 등 5종	카페(세부업종 다름)

기타	국군복지단(PX)	롤케익 등 4종	세부업종 다름(일반인 출입X)
	삼일회계법인 구내식당	냉동반죽 등 218종	세부업종 다름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아니거나 업체 전용 제품만 공급하는 경우 제외하였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흡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씨제이푸드빌	https://www.tlj.co.kr/	꽃&케익 택배 배송 (케익 4종과 세트 구성)	꽃&케익 세트 구성
	유어버스데이	http://www.yourbirthday.co.kr	케익, 선물류 15종 + 꽃, 샴페인 세트 구성	세부업종 다름
	쿠팡	https://www.coupang.com/	B2B 전용제품 6종	

* 씨제이푸드빌 뚜레쥬르 온라인몰(<https://www.tlj.co.kr/>)은 꽃&케익 세트 구성 택배 배송 및 케익, 선물류 예약 배송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케익, 선물류 예약배송은 가맹점으로 연결하여 판매(가맹점 매출)하고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픈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85.7%	14.3%	0.0%	0.0%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중 가맹점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은 연간 평균 매출액 매출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당사가 전체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에 매출액 환산 추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기타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은 직영점 및 B2B 매출액입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78.8%	21.2%

*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대부분은 직영점 테스트 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점 전용상품을 구분하기 어려워 오프라인 전용상품 수는 가맹점 및 직영점에서 판매중인 오프라인 상품수로 기재하였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수정, 해지

1) 가맹계약기간

뚜레쥬르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재 계약 시점부터는 **1년씩** 갱신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번호	순서 (계약만료일: D-day)	기간
진행	①	귀하께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셨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아래의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께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15일 이내
	⑤	귀하께서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셨습니까? 예→C, 아니오→⑥	D-180 ~ D-90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D-180 ~ D-90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께서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결과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당사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계약조문
------------	------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1조 1항 각호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되는 경우	
천재재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본 계약상의 가맹금 지급 등 금전지급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준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별첨2. 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3회 이상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제42조, 43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가맹사업법 및 관련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귀하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당사의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당사에 지급할 공급품 대금 및 기타 채무의 미지급금이 거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42조1항 각호
BI / SI를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경우 와 당사의 상호, 당사가 사용할 것을 공지한 상호, 당사가 사용하였던 상호를 당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방제서비스 계약 미가입과 충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당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당사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매뉴얼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며, 포인트 부정적립 등 기망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브랜드의 통일성과 제품의 품질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가맹점 위생과 제품 품질의 표준 기준을 엄격히 준수 할 점포기사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당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와 고객정보를 고객과의 계약내용 또는 법령의 허용 범위 이외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영업을 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판촉활동에 동참을 거부하거나 당사와 합의한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해진 공통제품 외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원재료를 전용하는 경우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와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정하여 고객에게 반복적인 클레임을 제기되는 경우	
기타 가맹계약 시에 협의한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귀하의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귀하께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42 조 2항 1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42 조 2항 2호
당사가 계약상의 중요의무를 불이행하여 가맹점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42 조 2항 3호

당사 및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 즉시 계약 해지 사유 (상호간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귀하께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3 조 1항 각호
당사 또는 귀하께서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귀하께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당사의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43 조 2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가맹점사업자가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동종법규 위반 시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봅니다.)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에서 운영하는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의 고의적인 삭제, 변조 보관•판매 및 운영상에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등 관련 제반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의 개정, 기타 계약 수정 사유 발생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POS 공지 이후 가맹점사업자 동의를 받아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재 계약 여부를 물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께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절차	진행 내용
가맹점사업자 서면 신청	양도 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
본사 승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승인 결정 후 신청 접수 (영업기간 중 계약 위반 또는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미 승인)
양도양수 담당부서 검토	점포 현황 및 인테리어 설비 실사 점검
양수희망자 면접	신규점포 프로세스에 준하여 양수희망자 면접 실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점포 매출, 투자비 공개 및 환경개선에 따른 재 투자비 발생시 사전 공지
가맹계약 체결	가맹계약 및 개설일정 협의
본사 교육 입소	신규점포 교육 동일
오픈	

*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가맹점을 개점하기 위하여 개점비 및 교육비, 거래보증금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단, 환경개선 진행시 기획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동의하는 경우 당사와 양수인은 새로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양수인에게 부여하고 새로운 가맹계약에 따라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상속, 대리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및 대리행사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에 준함	교육수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양도절차에 준함	교육수료
업무위탁	불가능	-		

* 영업의 상속 및 증여에 따른 경우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배우자 또는 존·비속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중 귀하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뚜레쥬르와 같은 업종(타사 가맹점 및 독립제과점포)을 경영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베이커리 가맹사업, 가맹점 및 베이커리 판매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검토→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뚜레쥬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 시간	영업 일수
07:00 ~ 23:00	월 2회 미만 휴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귀하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제품의 품질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제빵기사를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하고 시간제 근무 등의 종업원은 귀하가 판단하여 고용합니다. 제빵기사의 인원은 매출규모 및 상권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 · 감독 항목	방 법	빈도 및 시기	담당

위생 상태	담당자 수시 방문	수시	점포컨설턴트 및 위생파트
품질 관리	제빵기사 재교육 및 방문점검	수시	품질관리파트 및 기술지원팀
친절도 및 클레임 관리	담당자 수시 방문	수시	점포컨설턴트 및 CS파트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구분	광고 성격	부담 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상품광고	50%	50%	광고 계획 공고 시 가맹점 별도 부 담 없음	광고 계획 미공고 시 가맹점 별도 부 담 없음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물행사		별도 공지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분담 별도 공지 되지 않은 경우 판촉물 비용 ¹ 50% 비율로 분담		주문 시 반영	별도 공지
할인 행사 ²		별도 공지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분담 별도 공지 되지 않은 경우 50% 비율로 분담		주문 시 반영 또 는 별도 정산	
제휴 행사 (통신사, 신용카드 등)		제휴할인, 쿠폰할인, 적립금 및 수수료 50%	제휴할인, 쿠폰할인, 적립금 및 수수료 50%	월 단위 반영 의 월 정산	
가맹점사업자 개별행사 (LSM ³ 행사포함)		가맹점사업자 부담 원칙			본사 사전 승인

*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께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을 하시려는 경우, 귀하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의 비용으로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¹ 판촉물 비용이란, 가맹본부가 판촉물제작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판촉물을 구입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입비·보관비·관리비·운반비 등 관련된 직·간접적인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² 할인행사 비용 분담 비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50% 부담함을 기본으로 하되 성격에 따라 분담하는 비율은 별도 합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³ LSM(local store marketing)이란 각 점포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으로서 해당 매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당사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계시 또는 사용 기간 1 일당 금 일십만 원(₩100,000)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080-376-8888),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tlj.co.kr) -점포개발자 전화상담, 본사방문, 현장상담, 창업설명회 참석		
사업설명·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입지선정, 점포개발자 상권분석)	가맹계약 14일 전	없음
가맹계약서 제공	계약체결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전 제공	가맹계약 14일 전	
점포 계약	선정된 점포의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		각 점포별 상이
가맹 계약	-예상매출 산정서 제공 -가맹 계약 체결		
가맹금 납부	프랜차이즈보증보험 가입 이후 요청 (개점비 + 보증금 +기획관리비 + 교육비)	오픈 45 ~ 25일 전	
점포실측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도면작성	인테리어 도면 협의		
개점 전 교육	가맹점주 신입교육	15일간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지급	오픈 25~20일 전 착공	해당비용의 50%
	인테리어 공사 잔금 지급	오픈 8~2일 전 완공	해당비용의 50%
오픈 준비사항 협의	컨설턴트와 판촉계획 등 협의		없음
제반 인허가 취득	위생교육,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소방필증, 제과협회가입 (개별 취득)	오픈 25~5일 전	개별 부담
설비, 집기 설치	기자재 및 소품 설치 계약금 지급	인테리어 계약시	해당비용의 30%
	기자재 및 소품 설치 잔금 지급	오픈 3~2일 전	해당비용의 70%
제빵기사 투입	제빵기사 투입	오픈 2~1일 전	개별 부담
오픈 최종점검	오픈 인력 지원 인근 홍보활동	오픈 2~1일 전	규정량 초과 시 개별부담
오픈	가맹점 영업 개시	오픈 일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오픈 최종점검) 기본 오픈 지원 인력 외 주방/매장 오픈 인력 추가 희망할 경우 주방인력(20일) 4,800천 원, 매장 인력(14일) 2,700천원 점포 부담(별도 계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 개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가구·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협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본부의 권유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점포환경 개선 시행 ◦가맹점사업자의 신청 → 가맹본부의 검토 및 승인(서면 회신) → 점포환경 개선 시행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본부로부터 소개받은 이외의 업체를 통해 시공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총 지급 금액을 12개월로 분할 지급) ◦가맹본부로부터 소개받은 업체를 통해 시공시 비용 정산시 부담 비율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시공업체에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 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와 협의를 하지 않거나 본사의 승인 없이 점포 환경개선을 진행하여 브랜드 BI, SI 미 준수 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가맹본사의 매뉴얼에 따라 변경해야 함.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전단지, 시식물량 등 지원	신규 (개점비 납부)	별도협의	약 150 만원	교육 미 수료시 지원 안됨
오픈반품	오픈점에 대하여 일정품목에 대하여 반품지원	신규 (개점비 납부)	최대 60 일	가맹점 매입금액의 80%만 인정하여 반품금액 별도 산정	점포 생산제품 대상 반품 가능
제휴카드 할인 및 적립	통신사, 신용카드 등의 제휴 할인 및 적립 제도 운영	없음	가맹계약기간	할인금액의 일부 본사 부담 (별도공지)	월 정산 후 익월 반영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정기방문지도	가맹점 사업자에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점포 방문일정 사전 공유하여 점포 현장에서 경영지도 함.	가맹본부 부담	월 2회 이상 방문 원칙
수시방문지도	가맹점사업자 요청으로 제품교육, 서비스교육, 위생 교육 등 점포별 특성에 따른 가맹점 경영 지도	가맹점사업자 방문 요청 시 일정 협의하여 점포 방문 교육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 매출 활성화 프로그램	점포 Know-how + 트렌드 + 고객 중심의 개선을 통해 No.1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점포 체질개선 Solution 적용	별도 신청 점포 중 가맹본사에서 선정하여 시행	가맹본부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창업대출은 하고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용	신용 제공자	금 액	신용 형태 및 조건	신용제공 조건
농협 중앙회, 하나은행 업무협약	가맹점 사업자	창업자금 소요자금의 5천 만원 이내 운영자금 최근 3 개월 매출액 범위 내 (5 천 만원 이내)	신용대출, 담보대출 6%~7%	가맹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가맹점 사업자 등의 정보 제공 (대출서류)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돋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지원기간	비고
생산기사 연장근무(OT) 지원	저매출 가맹점 생산기사 연장근무(OT) 50%지원	전년 제조제품 매입가 하위점포 선정하여 생산기사 연장근무(OT) 50%지원 (매년 점포 선정)	선정 후 1년 이내 지원	휴점, 구조개선 등 운영일수 기준 미달인 경우 제외
가맹점 단체납품 지원	가맹점 단체납품 할인건에 대해 일부 지원	매입상품군 제외한 제품군 단체납품 할인 공급시 공급총액 기준 3%~7% 지원 (제품군별 지원율 및 최소 공급가 기준 별도 공지)	납품 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시 제외)	증빙자료 없거나, 시즌 특납건 제외
점포 컨설팅 (TRM)	상권이슈, 매출 부진 점포 컨설팅	컨설팅 신청 점포 중 가맹본부 심사 후 선정된 점포 대상 점포진단, 상권분석, 매출활성화 컨설팅 (설문, 시장조사, 상권분석 등 가맹본부 비용 부담)	점포 컨설팅 약 4주~10주	

* 당사 지원 정책 및 세부 운영방식은 사전 고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뚜레쥬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교육 내용	소요 시간	장 소
오퍼레이션 교육	회사소개, POS, 제품제조 생산 실습	7일	당사 아카데미
현장교육	R/P, 시뮬레이션, 우수가맹점 현장교육	5일	당사 아카데미 / 우수가맹점
매니지먼트 교육	인사관리, 주문발주시스템(FIMS), 안전관리	3일	당사 아카데미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뚜레쥬르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명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 일정	교육 시간
가맹점사업자 교육	오픈 1년 이상 경과한 가맹점주	서비스스킬, 위생법	2년 /1회	5 시간
위생보수교육	해당 가맹점주	위생법	상시	2 시간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최소 시간	비 용	비 고
개점 전 교육	15일(114시간)	275	추가인원 1명 137.5
가맹점 사업자 교육	5시간	없음	격년으로 실시
위생, 서비스 보수교육	2시간	별도비용 공지	상시

※ 개점 전 교육 2명 초과시 입과 인원 1명당 교육비 137.5만원 추가 됩니다.

※ 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 시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은 명의자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본사의 사전 승인 시 실운영자 참석이 가능합니다. 가맹점 영업개시 후 가맹점 실제 운영자(가맹점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 비용으로 개점 전 교육을 다시 수료해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연기, 지연 및 개점행사비가 미 지원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및 관련 법 위반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부산	부산장산역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79-2 세종월드 120,121
2	경기	안양범계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0번지 평촌코아빌딩 101,102호
3	서울	공덕해링턴	서울 마포구 도화동 25-13 B동 1층 1호
4	서울	용산역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용산민자역사 3층 맞이방
5	서울	건국대병원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1층
6	서울	제일제당사옥	서울 중구 쌍림동 292 CJ제일제당빌딩 1층
7	인천	롯데마트부평역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민자역사 롯데마트 3층
8	서울	오쇼핑사옥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방배동,(주)CJ오쇼핑)
9	서울	구로디지털직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79 (구로동,조영빌딩) 1층
10	서울	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동 지하1층
11	서울	카페교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9 (서초동,나라빌딩) 1층
12	서울	잠실트리지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61 (잠실동,트리지움) 101호
13	서울	카페서현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32 (서현동,분당문화센터) 분당문화센터 1층
14	인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300 바이오플라자2 3층
15	서울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
16	서울	브레드캐스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66 CJ ENM센터 1층
17	부산	부산서면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97-1,1층
18	서울	강남직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6,스타플렉스 1층 105,106,107호
19	경기	일산동국대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동국로 27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지상 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년 6개월	24년 12월 31일 기준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100,363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당사 담당자(02-6740-456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고 있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http://www.tlj.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J 푸드빌(주)의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는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전자공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1>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1-2> 포괄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1-3>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
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공급자재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주요 품목별 2024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